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7. 17.

발의자 : 박완주 · 박선숙 · 박홍근
김종민 · 송갑석 · 이재정
남인순 · 김영춘 · 신창현
기동민 · 김민기 · 백혜련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육성하고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장기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,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통한 품질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 또한,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,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4조, 제6조의2, 제7조, 제8조 및 제29조).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
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·확인한 결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
가.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, 농지·임야·사육시설·어장의 소재지 및 법인의 소재지

나. 재배 품목, 품목별 재배 면적

다. 가축의 종별 사육규모

제7조 중 “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장은”을 “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”로 한다.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융자·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2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 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 터 3년으로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의2(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) (생 략)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의2(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
2. ·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2. · 3. (현행과 같음) 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·확인한 결과 등록 된 농어업경영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

	<p><u>가.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, 농지·임야·사육시설·어장의 소재지 및 법인의 소재지</u></p> <p><u>나. 채배 품목, 품목별 채배면적</u></p> <p><u>다. 가축의 종별 사육규모</u></p> <p><u>② · ③ (생 략)</u></p> <p>제7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)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8조(자금 지원 등의 제한) ① <u><신 설></u></p> <p>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융자·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</u></p>
--	---

<p>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.</p>	<p><u>에 따른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</u> <u>를 확인한 후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 략) 제2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 략) <신 설>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2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</u>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</u> <u>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</u> <u>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</u> <u>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</u> <u>수 있다.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